

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19. 7. 12.

예천군의회 의장



1. 제정이유

○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생명보호와 우리 군의 안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예천군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관한 지원 및 보상, 교통안전교육, 교통사고 예방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및 보상(안 제5조)

○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
나. 교통안전교육(안 제6조)

○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실시 가능

-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
-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
-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

다. 교통사고 예방 지원(안 제7조)

-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지원

3. 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19년 7월 19일**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- 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- 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syjh2000@korea.kr

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안전법」 제3조제2항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운전면허”란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.
2. “고령운전자”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및 보상)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(失效)시킬 목적으로 스스로 반납하여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중교통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교통카드 또는 「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할 수 있다.

제5조(교통안전교육)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체험시설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
2.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
3.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
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교육 등

제6조(교통사고 예방 지원)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